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2. 9. 30.>

## **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**(제27조 관련)

| 위반행위  | 해당 법조문   | 처분내용   |
|---|----------|--|
| 1. 삭제 <2014.9.19.>  |          |  |
| 2.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주사무소가 있는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도와 이와 맞닿은<br>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 또는 도 외의 지역에<br>상주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  | 제21조제2호 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   |
| 3.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<br>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 | 제21조제3호 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5일)  |
| 4. 최대적재량 1.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가 주차장, 차<br>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<br>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한 경우  | 제21조제4호 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5일)  |
| 5. 신고한 운임 및 요금 또는 화주와 합의된 운임 및 요금이 아닌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을 받은 경우  | 제21조제5호  | <ul><li>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</li><li>○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60일)</li><li>○ 3차 이상: 위반차량 운행정지(90일)</li></ul>  |
| 6. 화주로부터 부당한 운임 및 요금의 환급을 요구받고 환<br>급하지 않은 경우   | 제21조제6호  | <ul><li>○ 1차: 위반처량 운행장자(60일)</li><li>○ 2차: 위반처량 운행정자(90일)</li><li>○ 3차 이상: 위반처량 운행정자(120일)</li></ul> |
| 7.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| 제21조제7호 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20일)   |
| 8.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알아보기 업도록 해당 운송사업자의 명칭(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말한다)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. 이 경우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화물 자동차를 사용해서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사업자는 "화물"이라는 표기를 한국어 및 외국어(영어, 중국어 및 일본어)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. | 제21조제8호 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   |
| 9.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| 제21조제9호 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   |
| 10.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대인보험이나<br>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자동차를 운<br>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물자동차를<br>운행한 경우   | 제21조제10호 | <ul><li>○ 1차: 위반차량운행정지(20일)</li><li>○ 2차: 위반차량운행정지(30일)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.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화물<br>자동차를 운행하거나 그 가입이 실효된 상태로 화<br>물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 | 제21조제11호 | <ul><li>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(20일)</li><li>○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 (30일)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12. 화물자동차(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제외한다)를 「자동차관리법」 제4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| 제21조제12호 | 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<br>(20일)<br>○ 2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<br>(30일)  |
|--|----------|---|
| 14.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차 안에 화물운송 종사자<br>격증명을 게시하지 않고 운행하게 한 경우  | 제21조제14호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  |
| 15. 삭제 <2014.11.28.> 16. 화물자동차 운전자로 하여금 「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6조에 따른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가 해당 장치 또는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하도록 한 경우  |          | <ul><li>○ 1차: 위반차량 운행정지(20일)</li><li>○ 2차 이상: 위반차량 운행정지(30일)</li>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7. 삭제 <2018. 12. 31.> 18.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 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에 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그 운송을 위탁 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등 화물운송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|          | ○ 1차: 사업 전부정지(10일)<br>○ 2차: 사업 전부정지(20일)<br>○ 3차: 허가취소  |
| 19.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집화등 외<br>의 운송을 한 경우   | 제21조제19호 | <ul><li>○ 1차: 사업전부정지(10일)</li><li>○ 2차: 사업전부정지(20일)</li><li>○ 3차: 허가취소</li></ul>                  |
| 20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구난 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해 고장·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고장·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구난을 지시하거나 구난한 경우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 가. 고장·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사망·중상 등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경우 나. 교통의 원활한 흐름 또는 안전 등을 위해 경찰 공무원이 차량의 이동을 명한 경우 |          | <ul> <li>○ 1차: 사업 전부정지(20일)</li> <li>○ 2차: 사업 전부정지(40일)</li> <li>○ 3차 이상: 사업 전부정지(60일)</li> </ul> |
| 21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구난<br>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·사고차량을 운송<br>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<br>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·요<br>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<br>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 |         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  |
| 22.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<br>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   |         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10일)  |

| 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을 시작하기 전에 화주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·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<br>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<br>은 경우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23. 운수종사자에게 제21조제23호에 따른 휴게시간을   | 제21조제23호 | ○ 1차: 사업 전부정지(10일)  |
| 보장하지 않은 경우   |          | ○ 2차: 사업 전부정지(20일)  |
|  |          | ○ 3차: 사업 전부정지(30일)  |
| 24.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「도로교통법」 제46조의  | 제21조제24호 | ○ 위반차량 운행정지(60일)    |
| 3을 위반하여 난폭운전을 하지 않도록 운행관리를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하지 않은 경우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25. 「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밴형  | 제21조제25호 | ○ 1차: 사업 일부정지(10일)  |
|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주와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  |          | ○ 2차: 사업 일부정지(20일)  |
| 운송사업자가 법 제12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거나   |          | ○ 3차 이상: 사업 일부정지(30 |
|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같은 호의 행위를 지시한  |          | 일)                  |
| 경우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 26. 위·수탁계약서에 명시된 금전 외의 금전을 위·  | 제21조제26호 | ○ 1차: 사업 전부정지(10일)  |
| 수탁차주에게 요구한 경우  |          | ○ 2차: 사업 전부정지(20일)  |
|  |          | ○ 3차 이상: 위반차량 감차 조치 |
|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
## 비고

- 1. 삭제 <2018. 12. 31.>
- 2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(제5호, 제6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, 제26호의 경우에는 5년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3. 비고 제2호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비고 제2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4. 제12호의 위반행위에서 제외하는 "영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"에 대해서는 영 제5조제1항 전단 및 별표 1 제2호머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한다.